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8
----------	------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8.5. 박순규 의원 등 3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8.10.

다. 상정 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이 맡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 맡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바,
-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안 됨.

2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 서울특별시의회는 2014년 당시 행정규칙(예규)이었던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이하 “표창규정”)을 자치 조례로 격상시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¹⁾한 후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 중임.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①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②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1) 당시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의장의 표창수여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에 그 근거를 뒤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09-00037, 김종욱 의원 대표발의)”, 2014.9.30.,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3쪽.

- 본 개정안이 변경하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조례의 전신(前身)인 표창규정에서 운영되어 온 방식을 그대로 옮겨온 것임.
- 이와 관련해 2009년 최초로 도입된 의회 표창 제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운영위원장을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둔 명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기 보다는 당시 제도 운영상의 편의 또는 관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표창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높이고 의장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임.
- 참고로 2020년 8월 말 기준 시의회사무처 소관 각종 위원회 중 자치법규로써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는 현행 조례뿐임.
-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의회 중 유일하게 표창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은 의회사무처장이 수행하고 있음.
-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함.

3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함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상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①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② 공공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각각 심사해 표창함(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런데 조례 11조제1항제2호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표창대상자가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한’ 표창대상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큼.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1. 생략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⑥ 생략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조문 해석상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의회 표창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방법 또한 문제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5일

발 의 자 : 박순규, 장상기, 전병주, 홍성룡,
노승재, 김상훈, 양민규, 최기찬,
박기열, 성흠제, 채유미, 김재형,
권영희, 이정인, 문장길, 이광호,
이동현, 강대호, 송정빈, 서윤기,
김생환, 송명화, 송아량, 김경우,
김제리, 전석기, 황인구, 김 경,
강동길, 장인홍, 김종무, 김희걸
의원(32명)

1. 제안이유

-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이 맡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를 “추천한”으로,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로, “조사한 후”를 “조사하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p> <p>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p> <p>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 ----- ----- ----- ----- 1. ----- ----- 추천한 ----- ----- ----- -----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p> <p>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p>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 ⑥ (생략)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생략)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4호 서식-----

--.

③ -----
----- 경우 -----

조사하고-----
----- 제2항에 따른 -----
-----.

제14조(수상자 명부) -----
----- 별지 제5호 서식-----

-----.